

☎04427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46길 37(이촌동) [http://www.kma.org]/전화(02)6350-6560/전송(02)790-8911  
보험국장 김기성[6574] / 보험급여팀장 고영옥[6572] / 팀원 이승아[6560] / e-mail: kma6571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813-7057호

시행일자 2024. 9. 23.

수 신 수신처 참조

참 조

제 목 건강보험 고시 등 안내 (2024. 9. 9. ~ 9. 22.)

- 우리협회는 보건복지부 고시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등을 비롯한 건강보험 관련 주요 안내사항을 의협 홈페이지(건강보험 고시안내)에 게재하고 매주 단위로 게시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.
- 이에, 2024년 9월 9일 ~ 9월 22일까지 「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(www.kma.org) > 공지-뉴스 > 건강보험 고시 안내」에 게시된 고시 관련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,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안내사항을 반드시 상시 확인하여 주시고, 귀 회 소속 회원이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연번	안내 일자	고시 번호	제 목 및 주요내용
1	2024. 9. 10.	[고시 아님]	<p>코로나19 유행 및 추석연휴 대비 비상진료 한시(24.8.28.~9.30.) 수가 추가 지원안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기존) 코로나19 대응 비상진료 한시 가산 수가(8.27. 안내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 한시적 추가 인상</li> <li>- 경증환자 분산진료를 위한 응급 진찰료 추가 확대</li> <li>- 코로나19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 진료지원금</li> </ul> </li> <li>○ (추가 지원) 추석연휴 대비 비상진료 한시 수가 추가 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추석연휴 운영 병의원 및 약국 진찰료, 약국 조제료 추가 가산 (9.14.~9.18.)</li> <li>- 추석연휴 대비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 한시적 추가 인상 (9.11.~9.25.)</li> <li>- 추석연휴 대비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(별표3) 가산 한시적 추가 확대 (9.11.~9.30.)</li> <li>- 코로나19 입원환자 대상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한시적 확대 (9.11.~9.30.)</li> </ul> </li> </ul> <p>○ 추가지원 적용기간 : '24.9.11.(수) ~ 9.30.(월) 24시 종료</p>
2	2024. 9. 12.	제2024-181호	<p>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일부개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경증응급환자 및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대형병원의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우, 그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을 100분의 90으로 상향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응급실 재방문시 수가 산정방법 개정</li> </ul> </li> <li>○ 「응급의료법」 개정(중앙응급의료센터'를 응급의료기관에서 제외)에 따른 자구 수정</li> </ul>

연번	안내 일자	고시 번호	제 목 및 주요내용
3	2024. 9. 12.	제2024-182호	「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」 일부개정 ○ 상기 고시 제2024-181호 관련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신설
4	2024. 9. 13.	[고시 아님]	코로나19 유행 및 추석연휴 대비 비상진료 한시('24.8.28.~9.30.) 수가 추가 지원 대상기관 변경 사항 안내 ○ 코로나19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 진료지원금 - 지정취소 6개소, 추가지정 7개소, 총 109개소로 변경 - 수가 적용 기간 · (지정취소기관) '24.9.12. 24시까지 적용 · (추가지정기관) '24.9.13. 00시부터 적용 ○ 코로나19 입원환자대상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한시적 확대 - 추가지정 1개소, 총 164개소로 변경 - 수가 적용 기간 · (추가지정기관) '24.9.13. 00시부터 적용
5	2024. 9. 13.	심평원 공고 제2024-210호	「심사지침」신설 및 개정 안내 ○ 심사지침 신설 및 개정(총 6항목) - '측두골에 시행하는 다245-1 Cone Beam 전산화단층영상진단의 적용기준' 신설 1항목 - '골 결손부에 사용하는 골 대체물질의 인정범위' 외 개정 4항목
6	2024. 9. 19.	[고시 아님]	추석 연휴 운영 진료(조제)지원금 청구가능일자 변경 안내 ○ 추석 연휴 운영 진료(조제)지원금 청구는 2024.9.30.부터 가능(기존 2024.10.14.)토록 변경함

※ 건강보험 고시 안내(URL) : <https://www.kma.org/notice/sub16.asp> 끝.

## 대한의사협회장

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

수신처 : 각 시도지사회장, 각 학회장,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, 각과 개원의협의회회장, 한국여자의사회장, 대한병원장협의회회장